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부지를 「농지법」 상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농지로 규정하면서 주민참여협동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협의가 있을 때는 이외 농지에도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
-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영농의무, 적합 작물재배의무, 발전 설비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면서, 주민참여협동조합과 농업법인에게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수익 일부를 환원하도록 규정함(안 13조).
-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갱신의무를 부여하고,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II. 검토의견

1. 사적자치 영역에 대한 행정청의 공권력작용(행정대집행, 과태료) 삭제

- 안 제18조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중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농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허가일로부터 30년 내의 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계약갱신 증액청구는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히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 또는 종료되는 경우 농지를 계약 체결 이전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고, 불이행 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농지 임대차 계약은 농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민법」 제7절(임대차, 제618조부터 제654조까지), 「농지법」 제2절(농지의 임대차 등,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농지 임차인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법령상 요건을 구비한 후 농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청으로부터 허가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농지의 소유권은 농지 임대인에게 있고 원상회복의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 등은 민사의 영역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그런데 안 제18조제4항 후단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 대하여 행정청이 농지 임차인에게 공권력적 행정작용(원상회복의무 불이행 확보수단으로서 행정대집행)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체계를 감안하여 안 제18조제4항 후단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같은 취지에서 안 제30조(과태료) 제1항제3호는 농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의 의무불이행 확보수단인 과태료를 의무적으로 500만원 이하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3호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위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8조(임차인 보호 등) ① 농지 임대인은 제8조에 따라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농지 임차인이 같은 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 및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가 유효한 범위에서 이 법 제7조에 따른 허가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임차인 보호 등) ① (생략)
1. 농지 임차인이 농지 임대차	1. ~ 5.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의 견
계약에 따른 차임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농지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농지 임대인이 농지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농지 임차인이 농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그 밖에 농지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지 임대차 계약 갱신의 경우 농지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지 임차인이 제8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때에 임차인 보호 및 발전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표준계약서의 작성·보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의 견
④ <u>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 또는 종료되는 경우 농지를 계약 체결 이전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 임차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법」 제42조를 준용하여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을 할 수 있다.</u>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u>발전사업 부지</u> 내 영농활동에 지장을 주는 발전설비를 설치한 자 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발전설비의 점검 및 <u>유지 관리</u>를 하지 않은 자 3. <u>제18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은 농지 임대인</u> 4.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u>아니한 자 또는</u>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u>자</u>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	④ <u>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 또는 종료되는 경우 농지를 계약 체결 이전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u> 제30조(과태료) ① (제정안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음) 1. ----- <u>발전사업부지</u>----- ----- 2. ----- -----<u>유지 · 관리</u> ----- <삭 제> 3. ----- ----- -----<u>아니하거나</u>----- -----<u>기업 · 연구기관 및 단체, 발전사업자</u> 4. (제정안 제5호와 같음)

제 정 안	수 정 의 견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정안과 같음)

2. 포상금 지급 주체 명확화

- 안 제17조는 포상금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안 제13조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지되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신고하여 조사 또는 처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포상금의 지급 주체는 포상금 지급의 핵심사항으로 법률에 지급 주체가 규정되어야 함에도 제정안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위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7조(포상금) 제13조에 따른 준 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지되 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신고하 여 조사 또는 처분에 기여한 자에 <u>대하여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 급할 수 있다.	제17조(포상금) ----- ----- ----- ----- ----- <u>대하여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은</u> ----- -----.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농촌특화지구계획’ 신설사항 반영

- 안 제9조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전사업 허가를 할 때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한 경우, 주민참여협동조합의 발전사업
부지를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 의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이 의제된 경우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일부터 2년 이내에 「농촌공간 재구
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¹⁾ 제11조의2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사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1) 의안번호 제DD20956호

하고자 하는데, 개정안이 동 제정안과 함께 의결될 경우 재생에너지 지구 지정 의제와 관련된 내용을 2년 이내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농촌특화지구계획’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간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위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

제정안	수정의견
제9조(「 <u>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u> 」 적용의 특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8조제3항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주민참여협동조합의 <u>발전사업 부지</u> 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재생에너지지구 지정의 의제) ① ----- ----- ----- ----- ----- -발전사업부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
②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지구의 지정이 의제된 경우,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정일부터 2년 이내에 「 <u>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u> 」 제7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② ----- ----- ----- ----- -----다음 각 호에 따른 계획에----- -----.

제 정 안	수 정 의 견
<u>획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에</u>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1. 「<u>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u>」 제 7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2. 「<u>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u>」 제 10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촌특화지구계획

4. 기타사항

-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 기 도)